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창업지원 기본 조례안



산업경제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이종섭

충청북도 창업지원 기본 조례안

■ 검토 보고서 ■

1. 발 의 자 : 김꽃임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5년 4월 11일

나. 회부일자 : 2025년 4월 14일

3. 제안이유

- 현행 충청북도 창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는 주로 기술창업과 관련된 규정으로 도내 창업을 희망하는 다양한 구성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였음.
- 이에 충청북도의 창업정책과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창업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창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혁신 성장 견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 창업지원 조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(안 제1조~제2조)
- 창업 활성화와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(안 제4조)
- 창업기업 등의 협력 (안 제5조)

- 창업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(안 제6조)
- 창업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(안 제7조)
- 창업지원위원회의 설치, 구성, 운영, 간사 등 (안 제8조~제10조)
- 창업 육성 및 지원 사항 (안 제12조)
- 창업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 등 (안 제13조)
- 창업교육, 창업행사 운영, 실태조사 (안 제14조~제16조)
- 업무의 위탁(안 제17조)
- 창업지원 기여자에 대한 포상(안 제18조)

5. 검토의견

가. 발의배경

- 충청북도는 현재 창업 관련 지원 조례와 정책이 타 광역에 비해 미비하여 계층별, 단계별 지원체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, 특히, 창업 초기와 도약 단계에서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부족한 상황임
- 충청북도는 교통망과 첨단 기술 인프라를 갖춘 창업 최적지이기에 지역 특성에 맞는 창업지원 모델 구축과 수도권 중심의 창업 생태계를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며, 충청북도의 창업 정책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창업 컨트롤타워 구축을 포함한 창업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정이 필요함
- 이러한 충청북도의 미비한 창업환경과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창업정책과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 마련과 도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,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

구성원에 대한 지원 및 지속적인 창업 촉진 활동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조례 제정을 추진함

나. 제정안 주요 조문 검토

- 안 제1조는 목적 조항으로 충청북도의 창업자 지원과 기술창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업 활성화와 창업 친화적인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함
-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정의하고 있으며, 용어에서 창업지원 대상자 등 범위와 자격을 명확히 하여 조례 적용의 투명성을 확보함
- 안 제4조는 충청북도 창업의 활성화와 기술창업의 효과적인 육성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해당 지원사업과 조례 운용의 시행을 담보함
- 안 제5조는 충청북도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창업자 및 창업기업 등 관련자들에게 해당 지원사업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지원사업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함
- 안 제6조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4년마다 창업지원 종합계획 수립과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,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해 전년도 시행계획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년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였으며,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·시행 시 창업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함
- 안 제7조는 도지사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

- **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**까지는 창업지원 자문을 위해 설치되는 창업지원위원회의 설치, 자문사항, 구성 및 운영, 간사, 수당 등 위원회 설치 근거와 기능 등 운영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규정하였고,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따르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음
- **안 제12조**는 창업 육성 및 지원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실질적 창업에 대한 지원이 되도록 하였으며,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함
- **안 제13조부터 안 제15조**까지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지원 시설의 설치와 이용에 대한 이용료 지원, 창업 저변 확대를 위한 창업교육, 창업 문화의 확산과 창업기업의 발전을 위한 창업행사 운영과 이에 따른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규정함
- **안 제16조**는 도지사가 창업지원에 대한 종합계획·시행계획 수립과 창업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
- **안 제17조**는 안 제12조부터 제16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, 절차와 방법은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를 따르도록 하여 업무 위탁의 공정성을 확보함
- **부칙 안 제2조**는 본 조례의 제정으로 기존 「충청북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하도록 하였음

- 부칙 안 제3조는 본 조례의 제정과 시행으로 기존 「충청북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행정기관 등의 행위에 대한 연속성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과규정을 두었음

다. 관련 법령 등 검토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3조 제2항에서 “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”, 제3항에서 “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”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

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3조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<p>제3조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생략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.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

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3조 제3항은 “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지역단위의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, 연구기관 등 지역 내 창업 관련 기관·단체와 교류 및 협력하여야 한다”고 규정한 후 제4항“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

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”고 지방자치단체가 창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대한 지원 효과를 높이는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음

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3조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<p>제3조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생략</p> <p>② 생략</p> <p>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지역단위의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, 연구기관 등 지역 내 창업 관련 기관·단체와 교류 및 협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

- 본 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「중소기업기본법」 과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의 지역 특성과 지원을 활용한 창업의 촉진과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조례로 정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라. 종합의견

- (필요성) 본 조례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과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에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통해 충청북도의 창업정책과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창업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창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혁신성장 견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짐
- (타당성) 충청북도의 창업지원은 본 조례안 제정 전 기존 「충청북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를 통해 지원을 하고 있었으

나 기존 조례는 주로 기술창업과 관련된 규정으로 도내 창업을 희망하는 다양한 구성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였기에 충청북도의 창업정책과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과 지속적인 창업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창업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으며,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○ (법적합성) 관련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, 조문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

○ (종합의견) 조례의 제정을 통해 충청북도의 창업정책 및 창업지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과 지속적인 창업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창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혁신 성장 견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,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보여짐

향후 관계부서에서는 본 조례를 바탕으로 충청북도의 전반적인 창업정책 수립과 창업지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